

의정부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8나214099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재판경과

의정부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8나214099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7가단121786 판결

전문

사건

2018나21409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원고,항소인 A

1. B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변호사 C

2.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산, 담당변호사 김기현, 이진성

변론 종결 2019. 7. 11

판결 선고 2019. 8. 29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7가단121786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변호사 C은 동두천시 D 전 1,63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동두천등기소2009 . 6. 17. 접수 제10111호로 마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의 말소등 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기술보증기금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심에 제출된 증거와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정동혁판사 박기쁨판사 지충현